



제422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에 국방부장관을 추가〉
■ 민홍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128호)

2025. 2.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민홍철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4. 12. 2.

다. 회 부 일 : 2024. 12.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어 금융회사들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한 자료를 특정형사사건의 수사 등에 필요한 경우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와 같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에 국방부장관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방위산업 기술 유출이나 무기체계, 방위산업 물자의 조달 등과 관련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에 국방부장관을 추가하여 방위산업, 군수품 조달 관련 군사 범죄행위에 적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군사 범죄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유에 방위산업, 군수품 조달 관련 불법행위의 수사를 포함하고, 해당 정보 제공기관에 국방부장관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0조).¹⁾

현행	개 정 안
제10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조세채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관세 범칙사건 조사, 관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관세채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및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의 조사, <u>금융감독업무 또는 테러위협인물에 대한 조사업무</u> (이하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이라 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특정금융거래정보”라 한다)를 검찰총장, 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u>금융위원회 또는 국가정보원장에</u> 제공한다.	제10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① ----- ----- ----- ----- ----- ----- ----- <u>금융감독업무, 테러위협인물에 대한 조사업무 또는 방위산업, 군수품 조달 관련 불법행위의 수사</u> ----- ----- ----- ----- ----- ----- <u>금융위원회,</u>

1. ~ 3. (생략) ②·③ (생략) ④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행정안전부장관,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u>국가정보원장</u>(이하 “검찰총장등”이라 한다)은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⑤ ~ ⑫ (생략)	<u>국가정보원장 또는 국방부장관에</u>----- -----.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 -----<u>국</u> <u>가정보원장, 국방부장관</u>----- ----- ----- ----- ----- -----. ⑤ ~ ⑫ (현행과 같음)
---	---

□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는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²⁾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이 수집·분석한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또는 국가정보원장 등 법집행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1) 표현 수정(“금융회사”→“금융회사등” 등) 등을 포함한 전체 신구조문대비표는 보고서 마지막에 별도로 제시함.
- 2) 불법재산·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조세채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관세 범칙사건 조사, 관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관세채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및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의 조사, 금융감독업무 또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

○ 그런데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대상 범집행기관에 국방부장관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군검찰단 등 군 차원의 방산·군납·병역과 관련한 불법행위의 수사 등에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군검찰단은 「군사법원법」 제36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관으로서 군검사의 사무를 관장하고 있음³⁾.
- 또한, 국방부검찰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방부검찰단의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군법무관인 장성급장교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하도록 규정함.

□ 이에 개정안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유인 특정

-
- 3) 「군사법원법」 제36조(군검찰단) ① 군검사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한다.
- ②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에 각각 고등검찰부와 보통검찰부를 설치하고, 보통검찰부는 제6조에 따른 군사법원에 대응하여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보통검찰부를 통합하여 둘 수 있다.
- ③ 국방부검찰단장은 국방부장관이 장성급 장교인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
- ④ 고등검찰부의 관할은 보통검찰부의 관할사건에 대한 항소사건·항고사건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고등검찰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으로 한다. 다만, 각 군 검찰단 고등검찰부는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의 일부를 국방부검찰단 고등검찰부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의 보통검찰부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검찰단: 국방부 본부,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의 군인 또는 군무원이 피의자인 사건. 다만, 국방부검찰단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의 일부를 각 군 검찰단에 위임할 수 있다.
 2. 각 군 검찰단: 다음 각 목의 사건
 - 가. 각 군 본부, 각 군 직할부대 소속의 군인, 군무원이 피의자인 사건
 - 나. 각 군 부대의 작전지역·관할지역 또는 경비지역에 있는 자군(自軍)부대에 속하는 사람과 그 부대의 장의 감독을 받는 사람이 피의자인 사건
 - 다. 각 군 부대의 작전지역·관할지역 또는 경비지역에 현존하는 사람과 그 지역에서 죄를 범한 「군형법」 제1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피의자인 사건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검찰단장은 범죄의 성질, 피의자의 지위 또는 소속 부대의 실정, 수사의 상황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수사의 공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각 군 검찰단 소속의 군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국방부검찰단으로 그 사건의 관할을 이전할 수 있다.
- ⑦ 국방부검찰단은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장성급 장교가 피의자인 사건과 그 밖의 중요 사건을 관할할 수 있다.
- ⑧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형사사건의 수사등의 범위에 방위산업, 군수품 조달 관련 불법행위의 수사를 포함하고, 국방부장관에게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위산업 및 군수품 조달 관련 불법행위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방위산업 또는 군수품 조달과 관련한 불법행위(이하 “방산·군납비리”라 함)에 대한 수사를 위해 수원지방검찰청에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가 설치⁴⁾되어 있으나, 방산·군납비리 사건의 첩보가 군 수사기관에서 수집되는 경우가 있고, 일반 검찰은 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부재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에 따른 경우 방산·군납비리 사건과 관련한 군검찰의 수사역량이 확대되고 관련 정보 수집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음.

-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대검찰청 포함)는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4)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6조의4(인천지방검찰청 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 인천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형사제5부, 형사제6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강력범죄수사부, 국제범죄수사부, 공판송무제1부 및 공판송무제2부를 두며, 수원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형사제5부, 형사제6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공수사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공판제1부 및 공판제2부를 둔다.

⑦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기술 범죄사건 및 방위사업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정비에 관한 사항
3.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사항

은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제공 대상 기관을 최소화할 필요⁵⁾가 있고, 방산·군납 비리 범죄의 특성 상 대부분 민간인과 공모한 사건으로 검찰도 수사가 가능하며, 특정금융거래정보에는 비군인 금융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군에 의한 민간인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방산·군납 비리에 대한 군 수사 역량 확대 측면과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대상 확대에 관한 관계부처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06

5) 2001년 법 제정 당시 당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에 대해 ‘법 집행기관의 과도한 정보제공 요구 방지와 개인의 금융비밀 침해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제공 요구기관을 축소’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한 바 있음.